

영등포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4. 2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195호로 2013년 4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부과를 현 상거래 실태에 맞게 수수료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3. 주요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제9조제2항 안 별표 2)

구 분	단독주택(L 당)		공동주택(kg당)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수 수 료	61원	60원	76원	75원
주민부담율	65%	64%	65%	64%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1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라 수수료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단독주택 수수료를 l 당 61원에서 60원으로 하고 공동주택 수수료를 kg당 76원에서 75원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앞서 관련 수수료를 거래의 현실화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수수료 조정으로 인한 주민부담을 또한 감소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관 련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